
입 법 정 보

2018-4호



목 차



1.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4
2. 교통안전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4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4
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5
5. 경찰위원회규정 일부개정령(안) (경찰청).....	5
6.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	6
7.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	7
8. 항만시설장비 관리규칙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	8
9.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식품의약품안전처).....	8
10.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식품의약품안전처).....	9
11. 증권거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9
12.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9
13.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10
1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11
15.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11
16. 주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11
17.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11
1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12
19. 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12
20.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13
2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14
22.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16
23.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16
24.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교육부).....	16
25.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여성가족부).....	17
26.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여성가족부).....	17
27.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법무부).....	17
28.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문화재청).....	18
29.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문화재청).....	18
30.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19
31.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금융위원회).....	19
3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금융위원회).....	21
3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위원회).....	22

34.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23
35.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25
36.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보훈처).....	25
37.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교육부)	26
38.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6
39.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7
40.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정거래위원회).....	27
41.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	28
43. 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농림축산식품부).....	29
44. 주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31
45. 신항만건설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	31
46. 신항만건설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	32
48. 어촌·어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	33
49.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	34
50. 선박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	36
51.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소방청장).....	36
52.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37
53.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37
54.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37
55.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38
56.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39
57.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교육부).....	39
58.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 (인사혁신처).....	40
59.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43
60.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방송통신위원회)·	43
61.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44
62. 항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45
63. 군보건의료에관한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방부).....	45
64. 인성교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교육부).....	46
65.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안) (중소벤처기업부).....	46
66.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정(안) (국토교통부).....	47
67.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정(안) (국토교통부).....	48
68.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교육부).....	49

정부입법 예고

1.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 예고일자 : 2018. 2. 12. ● 마감일자 : 2018. 3. 26.
- 현행 ‘철도의 날’ 이 한반도 침탈을 목적으로 건설한 경인선 개통(1899.9.18.)을 기념하기 위해 일제 강점기인 1937년 지정되었기에, 일제잔재 청산과 민족 자주성 회복 차원에서 우리나라 최초 철도국 창설일인 6월28로 기념일자를 변경하려는 것임
- 철도의 날을 9월 18일에서 6월 28일로 변경

2. 교통안전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 예고일자 : 2018. 2. 12. ● 마감일자 : 2018. 3. 26.
- 교통안전 특별실태조사 이행결과보고서 제출 절차 등에 대하여 명확히 규정하고, 교통안전법상 운행기록장치 운행기록의 주기적 제출 의무화 관련하여 제출 대상 및 제출기간, 제출주기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운행기록의 제출 기간 및 주기 규정(안 제30조제3항)
 - 매월 말일까지 제출일 직전 월 한 달간의 운행기록을 제출하도록 규정함.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 예고일자 : 2018. 2. 12. ● 마감일자 : 2018. 3. 26.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법률 제15320호, 2017. 12. 26. 공포, 2018. 4. 25. 시행)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와 관련된 교통안전 정보 공시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입법취지를 달성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공시 관련 사무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

탁(안 제38조제3항제1호)

-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와 관련된 교통안전정보의 공시 및 관리업무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

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 예고일자 : 2018. 2. 12. • 마감일자 : 2018. 3. 26.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법률 제15320호, 2017. 12. 26. 공포, 2018. 4. 25. 시행)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와 관련된 교통안전 정보 공시에 필요한 교통안전정보의 대상 및 기준, 공시의 방법 및 절차 등을 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교통안전정보 공시에 필요한 대상·기준·방법·절차·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함(안 제43조의2)
 -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와 관련된 교통안전정보의 평가·관리·공시 업무에 필요한 사항의 구체화

5. 경찰위원회규정 일부개정령(안) (경찰청)

- 예고일자 : 2018. 2. 12. • 마감일자 : 2018. 3. 26.
- 경찰위원회 실질화가 국정과제 중 권력기관 개혁 분야 세부 실천과제로 선정 되는 등 경찰위원회를 통한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가 요구됨에 따라 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 대상 범위를 확대 및 구체화, 경찰위원회 보고요구권 및 관계 경찰공무원의 보고의무 신설, 서면의 결의 근거 및 사유를 신설할 필요가 있어 경찰위원회규정을 일부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경찰위원회 심의·의결사항의 범위 확대 및 구체화(안 제5조)
 - 경찰법 제9조 제1항 제1호의 위임을 받아 ‘국가경찰의 인사, 예산, 장비, 통신 등에 관한 주요정책 및 국가경찰 업무 발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개별 계획을 열거적으로 나열하고 있는 현행

규정의 각 호를 정비

- 현행 규정 각 호를 모두 삭제하고 “경찰청 소관 법령, 행정규칙의 제·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등 7개 항목으로 재규정, 7호에 일반규정을 신설(안 제5조 제1항)

나. 경찰위원회 보고 요구권 및 관계 경찰공무원의 보고 의무 신설(안 제5조의2)

- 심의·의결을 위해 필요한 경우 경찰위원장이 관계 경찰공무원에게 보고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 신설, 이를 요구받은 관계 경찰공무원은 이에 대해 보고하도록 의무 규정 신설

다. 경찰위원회 서면의결의 법적 근거 및 사유 신설(안 제7조의2)

- 기존 경찰위원회 운영세칙으로만 운영하였던 서면의결의 법적 근거를 경찰위원회 규정에 신설하고, 기존 세칙상 서면의결 사유인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외에 “긴급한 사유로 출석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등 서면의결 사유를 신설

6.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

- 예고일자 : 2018. 2. 13.
- 마감일자 : 2018. 3. 26.

- 선박급유업을 선박연료공급업으로, 물품공급업을 선용품공급업으로 변경하고, 선박수리업을 항만운송관련사업에 포함하며, 내항화물운송사업 등록이 된 선박연료공급선의 영업구역을 전국의 항만으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항만운송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5011호, 2017. 10. 31. 공포, 2018. 5. 1.시행)됨에 따라, 선박연료공급업·선용품공급업으로 사업 명칭을 변경하고 선박수리업의 등록 신청서식 등을 변경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선박연료공급업·선용품공급업으로 사업 명칭 변경 및 선박수리업 신설에 따라 관련 서식 신설

7.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

- 예고일자 : 2018. 2. 13.
- 마감일자 : 2018. 3. 26.

○ 선박공급업을 선박연료공급업으로, 물품공급업을 선용품공급업으로 변경하고, 선박수리업을 항만운송관련사업에 포함하며, 내항화물운송사업 등록이 된 선박연료공급선의 영업구역을 전국의 항만으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항만운송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5011호, 2017. 10. 31. 공포, 2018. 5. 1. 시행)됨에 따라, 선박연료공급업·선용품공급업으로 사업 명칭을 변경하고 선박수리업의 등록기준등을 신설하며, 항만운송관련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항만운송관련사업의 업종별 사업 명칭 변경(안 제2조 개정)

- ‘물품공급업’의 사업 명칭을 ‘선용품공급업’으로 변경하고 선박수리용 부속품 등을 포함하도록 정의를 개정하여 선용품의 범위를 확대하고, 선박용연료가 기름(油) 위주에서 천연가스 등으로 다양화됨에 따라 ‘선박공급업’의 사업 명칭을 ‘선박연료공급업’으로 변경하는 동시에 ‘선박용 연료유’를 ‘선박용 연료’로 변경함.

나. 항만운송관련사업의 업종별 사업에 ‘선박수리업’ 신설 (안 제2조)

- 항만에서 이뤄지는 선박수리분야의 체계적 육성을 위해 항만운송관련사업에 ‘선박수리업’을 신설하여 그 등록기준 등을 정할 수 있도록 함.

다. 사업계획 변경 신고 위반 시 행정처분 및 과징금 규정 신설 등 (안 별표 5 및 안 별표9)

- 항만운송관련사업자가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장비를 추가하거나 사업계획서 기재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 및 과징금 기준을 마련하고, 관세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규정불비를 개선하고자 함.

8. 항만시설장비 관리규칙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

- 예고일자 : 2018. 2. 13. • 마감일자 : 2018. 3. 26.
- 하역장비 설치 시 부두 설계 하중에 대한 구조적 안정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정기검사 기준일을 명확하게 개정하는 등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 주요내용
 - 가. 정기검사 기준일 명확화(안 제4조제2항)
 - 정기검사 기준일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제조검사 또는 설치검사를 실시하고 시설장비 검사합격증을 발행한 날로 개정함
 - 나. 부두 설계하중 검토 명확화(안 제5조, 별표2, 별표3, 별표4, 별지 제4호서식)
 - 하역장비 설치 시 부두 설계하중에 대한 구조적 안정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검사 신청서에 부두설계하중 검토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함
 - 다. 설치검사 대상 조정(안 별표1)
 - 탑승교를 설치검사 대상 장비로 포함

9.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식품의약품안전처)

- 예고일자 : 2018. 2. 13. • 마감일자 : 2018. 3. 26.
- 동물실험시설에서 무등록 실험동물공급자로부터 실험동물을 공급받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 및 실험동물운영위원회의 설치·운영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한 제재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동물실험시설의 윤리성·신뢰성 제고에 기여하는 등의 내용으로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 15278호, 2017. 12. 19. 공포, 2018. 6. 20.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 동물실험시설에서 다른 동물실험시설, 우수실험동물생산시설, 실험동물공급자 이외의 자로부터 실험동물을 공급받아 이를 위반한 경우 행정처분 기준 마련 (별표 5)

10.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식품의약품안전처)

- 예고일자 : 2018. 2. 13. • 마감일자 : 2018. 3. 26.
- 동물실험시설에서 무등록 실험동물공급자로부터 실험동물을 공급받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자 및 실험동물운영위원회의 설치·운영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한 제재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동물실험시설의 윤리성·신뢰성 제고에 기여하는 등의 내용으로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5278호, 2017. 12. 19. 공포, 2018. 6. 20.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실험동물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이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입법되어 해당조항 삭제(안 제3조)
 - 나. 실험동물운영위원회의 설치·운영 의무 등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기준 마련(별표 2)

11. 증권거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 예고일자 : 2018. 2. 13. • 마감일자 : 2018. 2. 27.
- 「증권거래세법」 개정으로 증권거래세 신고기한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 「증권거래세법」 개정으로 증권거래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신고주기가 분기에서 반기로 변경됨에 따라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신고서」 및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거래명세서」 등 관련 서식을 정비함.

12.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 예고일자 : 2018. 2. 13. • 마감일자 : 2018. 2. 27.
- 연구중심병원을 관세 감면 대상 기관으로 추가하고, 2019 광주세계수영대회관련 물품의 관세를 면제하는 한편, 개항이 아닌 지역 출입 허가 수수료를 현실화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학술연구·교육용·훈련용·실험실습용 물품 등을 수입하는 경우 관세를 감면 받을 수 있는 기관에 연구중심병원을 추가함.
- 나. 2019년 개최되는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기 위하여 참가 선수단, 직원 등이 사용할 대회 관련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관세를 면제하도록 함.
- 다. 1982년 개정 이후 변동이 없는 외국무역선(기)의 개항이 아닌 지역 출입허가 수수료를 아래와 같이 현실화 하고, 상한액을 현행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하며, 하한액(1만원)을 신설함.
- 라. 성실 물류업체를 지원하고 업계의 자율관리 능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법규준수도, 재무건전성 등을 종합하여 평가하는 안전관리 기준 준수도를 ‘자유무역지역 입주업체’ 및 ‘보세운송업자·화물운송주선업자’의 관리·감독에 활용하도록 함.
- 마. 관세법 시행령 별표 개정에 따라 국세청장이 관세청장에게 제출하는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서식을 신설함.
- 바. 관세환급 가산금 등의 이율을 최근 시중금리 인상 추세를 반영하여 연 1.6%에서 연 1.8%로 인상함.

13.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 예고일자 : 2018. 2. 13.
- 마감일자 : 2018. 2. 27.

- 예탁증권 등과 관련한 예탁자별 이자·배당소득 지급실적자료 및 「수산업법」에 따른 어업손실보상금 지급자료 등을 과세자료의 제출 범위에 추가하도록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별지 서식 등을 신설하며, 현행 서식을 개정·보완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예탁증권 등과 관련한 예탁자별 이자·배당소득 지급실적자료 및 「수산업법」에 따른 어업손실보상금 지급자료 등 관련 서식을 신설함.
- 나. 토지 및 지장물(건축물)에 대한 보상금 지급자료 등 관련 서식을 개정함.

1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 예고일자 : 2018. 2. 13. • 마감일자 : 2018. 2. 27.
-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 제출기준인 매출액 금액 등의 계산방법을 보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 제출기준인 매출액 및 거래규모 금액을 연간 금액으로 하며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 중 국가별보고서 제출기준인 매출액 범위에 손익계산서의 수익항목을 포함하도록 함.
 - 나. 소득대비 과다이자비용 공제제한제도 및 혼성금융상품 관련 비용 공제 제한제도 관련 제출내용을 담은 서식을 신설함.

15.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 예고일자 : 2018. 2. 13. • 마감일자 : 2018. 2. 27.
- 과세물품제조업개업(변경·폐업) 신고시 담당공무원이 확인해야 하는 사항 중 주민등록표등본을 주민등록표초본으로 개정하는 등 과세물품제조업개업(변경·폐업) 신고서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16. 주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 예고일자 : 2018. 2. 13. • 마감일자 : 2018. 2. 27.
- 소규모주류의 소매점 등의 유통분에 대하여는 출고가격으로 적용하기 위하여 주류출고명세서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17.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 예고일자 : 2018. 2. 13. • 마감일자 : 2018. 2. 27.
- 부동산 임대의 대가로 받는 전세금이나 임대보증금에 대한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이자율을 최근 정기예금 이자율 추이 등을 고려하여 상향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부동산 임대의 대가로 받는 임대보증금을 임대료로 간주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이자율을 최근 정기예금 이자율 추이 등을 고려하여 연 1.6퍼센트에서 1.8퍼센트로 조정함.
- 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대행사업자의 자본금 요건을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재무상태표상의 자본금과 재무상태표상의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함을 규정함.
- 다.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시 면세공급가액의 범위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시 총공급가액은 과세사업에 대한 공급가액과 면세공급가액의 합계액으로 함을 규정함.

1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 예고일자 : 2018. 2. 13. • 마감일자 : 2018. 2. 27.
-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의 범위가 「법인세법」상 기부금 단체와 일치하도록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공익법인 등의 범위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9. 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 예고일자 : 2018. 2. 13. • 마감일자 : 2018. 2. 27.
- 합병·분할 시 자산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이연 요건에 고용승계 요건을 추가하고, 사회복지·학교·의료법인도 지정기부금단체 의무이행 규정이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법인세법」 및 같은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합병·분할시 고용승계 대상에서 제외되는 근로자의 범위를 설정하고 기부금단체의 의무이행 보고기한을 합리화하는 등 법령에서 위임하고 있는 내용을 정하는 한편, 법인 분할시 법인세 과세이연이 예외적으로 허용되어 분할에 따라 승계가 가능한 주식

중 분할하는 사업부문과 동일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의 주식범위를 매출액 기준으로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손비에 해당하는 회비의 범위를 법령 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상경비충당 등을 목적으로 조합원 또는 회원에게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부과하는 회비로 명확히 함.
- 나. 기부금단체의 의무이행 여부 등을 주무관청에 매년 보고하도록 함.
- 다.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대상 운전자 범위에 해당 법인의 운전자 채용을 위하여 면접에 응시한 지원자를 추가함.
- 라. 적격 합병·분할의 요건 중 승계대상 근로자에서 제외되는 근로자의 범위를 상해 등으로 퇴직하는 근로자,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퇴직한 근로자 및 분할하는 사업부문과 분할 존속하는 사업부문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근로자로 구체화함.
- 마. 법인 분할시 법인세 과세이연이 예외적으로 허용되어 분할에 따라 승계가 가능한 주식 중 분할하는 사업부문과 동일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의 주식의 범위를 매출액 기준으로 확대함.
- 바. 법인세 신고시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을 표기하는 등 법인세 신고 관련 서식을 개선·보완하고, 성실신고확인자 선임 신고서 및 성실신고확인서 서식을 각각 신설함.

20.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 예고일자 : 2018. 2. 13.
 - 마감일자 : 2018. 2. 27.
- 금리수준을 반영하여 주택 등의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시 적용되는 이자율을 인상하고, 파생상품 양도차익 계산시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범위를 확대하며, 1세대2주택에 해당하여도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를 규정하고, 금연치료 약제비를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사업소득의 범위에서 제외하며, 한국표준직업분류표 개정 및 직종 간 과세형평 등을 감안하여 연간 240만원 한도 내에서 초과근로수당이 비과세되는 직종의

범위를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주택 등의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시 적용하는 이자율과 주택임차차입금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개인간 소비대차계약의 최저이자율을 각각 1.6%에서 1.8%로 인상함. (안 제23조 및 제57조)
- 나. 파생상품 양도차익 계산시 투자일임수수료 중 온라인으로 직접 거래할 때 부과하는 위탁매매수수료 이하이면서 부과기준이 약관 등에 명시되어 있는 위탁매매수수료 성격의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함. (안 제76조의3)
- 다. 1세대2주택에 해당하여도 양도소득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를 규정함. (안 제83조)
- 라. 「국민건강증진법」 제2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민건강관리사업에 따라 지급받는 약제비용을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사업소득의 범위에서 제외함. (안 제88조)
- 마. 연간 240만원 한도 내에서 초과근로수당에 대한 비과세가 적용되는 직종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조정함. (안 별표 2 및 별표 2의2)

2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 예고일자 : 2018. 2. 13.
- 마감일자 : 2018. 2. 27.

- 신성장서비스업에 대해서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율을 상향하여 적용하고, 어업용 토지 및 자경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제도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신성장서비스업종을 추가하고, 어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관련요건을 구체화하는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중소기업에 대한 근로소득 증대세제의 적용기준이 되는 평균임금 증가율을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창업중소기업 중 초기 3년간 75퍼센트의 우대 감면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신성장서비스업 창업중소기업의 범위에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광고업중 광고대행업, 옥외 및 전시 광고업 등을 추가함.
- 나. 근로소득 증대세제 적용기준이 되는 중소기업 평균임금 증가율을 3.3퍼센트에서 3.6퍼센트로 상향 조정함.
- 다.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대상 기업 요건 판단시 적용되는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과세표준은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사업소득금액을 종합소득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곱하여 계산함.
- 라. 어업용 토지 및 자경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감면 범위, 상속인의 어업기간 승계 특례 요건 등을 규정함.
- 마. 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기업소득에서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을 차감하는 내국법인의 요건으로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및 출자지분 외의 다른 주식 및 출자지분을 보유하지 아니할 것 등을 규정함.
- 바. 정부업무대행단체 부가가치세 면제 사업에 농수산물도매시장 대금정산조직의 출하·판매대금 정산 용역, 근로복지공단의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중소기업중앙회의 중소기업제품 직접생산 확인사업 및 한국수자원공사의 노후 지방상수도 개량·관리·처리사업을 추가하고, 한국농어촌공사의 신재생에너지사업, 한국환경공단의 슬레이트 처리사업 및 농협·수협·산림조합의 보호예수 등을 제외함.
- 사. 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면제 신청서, 고용 증대 기업에 대한 공제세액계산서, 중소기업 사회보험 신규가입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공제세액계산서,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서 등 관련 서식을 신설하고, 연구 및 인력개발비 명세서에 공제율 변경 사항을 반영하는 등 관련 서식을 개정함.

22.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 예고일자 : 2018. 2. 13.
- 마감일자 : 2018. 2. 27.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지는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와 관련된 체납액을 납세증명서 발급시 제외되는 체납액에 추가하고, 압류 동산의 사용·수익 신청시 통지기한을 신설함에 따라 관련 서식을 개정하려는 것임.

23.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 예고일자 : 2018. 2. 13.
- 마감일자 : 2018. 2. 27.
-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을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연 1천분의 16에서 연 1천분의 18으로 인상하고, 세무조사 결과를 자세하게 납세자에게 알려주기 위하여 세무조사 결과통지서 내용을 보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4.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교육부)

- 예고일자 : 2018. 2. 13.
- 마감일자 : 2018. 2. 19.
- 국립대학의 교원 확보율 개선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62명(교수·부교수 또는 조교수 62명), 한국교원대학교 부설 유치원의 이전증설에 따른 업무총괄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 (원장 1명), 국립의 각급 학교의 효율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20명(5급 1명, 6급 1명, 7급 7명, 8급 8명, 9급 1명, 연구사 2명)을 각각 증원하고, 총액인건비를 활용하여 자율적으로 증원할 수 있는 정원의 한도를 총정원의 3퍼센트에서 총정원의 5퍼센트로 상향하는 내용으로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이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18. . . 공포·시행)됨에 따라 조정된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는 한편, 국립의 각급 학교의 인력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관리운영직군 정원 27명(6급 1명, 7급 1명, 8급 4명, 9급 21명)을 일반직으로 전환하고, 일반직 정원 3명(6급 1명, 7급 1명, 9급 1명)의 직렬을 조정하려는 것임.

25.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여성가족부)

- 예고일자 : 2018. 2. 14. • 마감일자 : 2018. 3. 26.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참여위원회를 운영하도록 한 법률 개정(법률 제15208호, 공포일 2017.12.12, 시행일 2018.6.13)에 따라 동 법에서 위임한 청소년참여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 청소년참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신설(제2조의2)

26.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여성가족부)

- 예고일자 : 2018. 2. 14. • 마감일자 : 2018. 3. 26.
- 일반 학생의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이 보다 쉽게 학교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유아교육법」 제2조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교원에 대하여 다문화 이해교육 관련 연수를 실시토록 하는 「다문화가족지원법」(법률 제15204호, 2017.12.12. 공포, 2018.6.13. 시행) 일부개정령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 다문화이해교육 관련 연수를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주요 내용 신설(시행령 제10조의2)

27.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법무부)

- 예고일자 : 2018. 2. 14. • 마감일자 : 2018. 3. 26
- 수신자료 활용범위 확대 등의 내용으로 · 전자장치부착법 · 이 개정(법률 제15161호, 2017. 12. 12. 공포, 2018. 6. 13. 시행)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항 반영(안 제8조, 9조)

- 법 조항 신설(법 제13조제2항, 제3항)로 인한 법 조항 변경 부분을 반영·정비

나. 수신자료 사용 대상 추가(안 제14조)

- 수신자료 사용 대상에 “피부착자의 효용유지의무 및 준수사항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는 경우”가 추가됨에 따라, 수신 자료를 사용한 경우 사용대장을 작성·비치하도록 규정

28.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문화재청)

• 예고일자 : 2018. 2. 14.

• 마감일자 : 2018. 3. 26.

- 「문화재보호법」이 일부개정(법률 제15065호, 2017.11.28. 공포, 2018.5.29. 시행)됨에 따라 “폐사한 천연기념물 동물의 부검” 등 신설된 신고사항에 대한 서식을 규정하고,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동물종의 수입·반입 신고”의 절차와 방법 등을 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폐사한 천연기념물 동물 부검 신고,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동물에 대한 위험방지 및 보존·생존을 위한 필요한 조치 등의 신고 시 신고서식 신설(안 제21조)

나.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동물의 종 수입·반입 신고에 필요한 서류 등 신고의 방법을 규정(안 제22조)

다.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동물의 종 수입·반입신고에 따른 수입신고 대장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23조)

29.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문화재청)

• 예고일자 : 2018. 2. 14.

• 마감일자 : 2018. 3. 26.

- 「문화재보호법」이 일부개정(법률 제15065호, 2017.11.28. 공포, 2018.5.29. 시행)됨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의 현상변경

허가대상 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동물의 보존 및 생존을 위해 필요한 조치”의 구체적인 행위를 규정하며, “동물의 수입·반입신고제 도입”에 따른 구체적인 절차 및 신고의 사후조치를 규정하는 등 시행령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천연기념물의 현상변경 허가대상 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함 (안 제21조의2)
- 나. 천연기념물의 보존 및 생존을 위한 조치 등의 신고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규정(안 제23조의2)
- 다.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동물의 종 수입·반입 신고의 구체적인 사항 규정(안 제23조의3)
- 라.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동물의 종 수입·반입 신고의 사후조치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23조의4)

30.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기획재정부)

- 예고일자 : 2018. 2. 14.
- 마감일자 : 2018. 2. 27.

- 과다환급금 징수 가산금 비율은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 평균을 감안하여 정하고 있는바, ‘17년 정기예금 평균 이자율 및 인상 추세를 고려하여 과다환급금 징수 가산금 비율을 연 1.6% 에서 연 1.8%로 인상하려는 것임.

31.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금융위원회)

- 예고일자 : 2018. 2. 14.
- 마감일자 : 2018. 3. 26.

- 소액 간단보험 시장 활성화를 위해 혁신적인 온라인 판매채널을 육성하고 모집서류·절차 등을 간소화하기 위해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그간 제도운영 과정에서 제기된 미비점 등을 개선하기 위해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단종손해보험”을 “간단손해보험”으로 용어 변경(안 제27조 및 안28조)
- 나. 간단손해보험대리점 등록가능범위 확대(안 제30조제1항)
 - 재화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본업으로 하는 자 이외에도 온라인 플랫폼 등을 통해 재화·용역의 판매·제공을 중개하는 자도 간단손해보험대리점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함.
- 다. 간단손해보험대리점의 영업범위 명확화(안 제31조제1항제2호)
 - 간단손해보험의 영업범위는 개인 또는 가계의 일상생활 중 발생하는 위험을 보장하는 손해보험상품으로 기준 명확화.
- 라. 전자금융업자의 간단손해보험대리점 등록 허용(안 제32조제2항)
 -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자금융업자는 간단손해보험대리점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소비자들이 재화·서비스를 구매하면서 관련된 보험에도 가입할 수 있도록 함.
- 마. 간단손해보험대리점의 영업기준 신설(안 제33조의2제4항)
 - 간단손해보험대리점이 재화와 보험을 모두 판매하는 특성 등을 고려해 보험계약은 재화 또는 용역과 별도로 분리하여 가입이 가능토록 하고 단체보험으로 판매시 보험계약의 핵심사항이 포함된 안내자료를 피보험자에게 사전에 제공토록 하는 등 소비자 보호장치를 정교화 함.
- 바. 간단손해보험대리점의 중요 설명의무 신설 및 통지의무 위반의 효과를 설명대상에 추가(안 제42조의2제1항)
 - 재화 또는 용역과 별도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내용 등을 보험계약자에게 사전에 설명하도록 하고, 상법에 따른 계약자의 통지의무를 보험 권유단계부터 설명해야 하는 내용에 포함하여 보험소비자를 두텁게 보호.
- 사. 중복계약 체결 확인 대상 확대(안 제42조의5)
 - 실제 손해액을 보상하는 보험계약에 대해 보험을 권유하는 단계에서 미리 보험회사 등이 중복계약이 체결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도록 하여 보험소비자를 두텁게 보호.

아. 보험업 경영제한 예외항목 명확화(안 제15조제2항)

- 보험업법의 취지에 맞게 제3보험업의 모든 종목을 영위하는 보험 회사에 대해서도 질병으로 인한 사망을 담보하는 특약을 판매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화.

3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금융위원회)

● 예고일자 : 2018. 2. 14.

● 마감일자 : 2018. 3. 26.

- 무허가 채권추심업자에 대한 채권추심업무 위탁을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이 개정(법률 제15146호, 2018.5.29. 시행)됨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미비점을 개선 ·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개인의 질병에 관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목적 확대 (안 제13조)

- 현재는 보험회사 · 체신관서 · 공제사업자가 개인의 질병에 관한 정보가 필요한 보험업 · 우체국보험사업 · 공제사업을 하는 경우에만 개인의 질병에 관한 정보의 이용을 허용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신용카드회사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질병에 관한 여신 금융상품을 취급하는 경우 및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에게 경제적 혜택을 제공하거나 금융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경우에도 개인의 질병에 관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질병에 관한 위험을 보장하는 다양한 금융상품이 제공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금융회사가 개인의 질병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금융 소비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함.

나.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대해 신용정보를 집중할 수 있는 금융기관의 범위 (안 제21조제2항)

- 일정한 금융기관 전체로부터 신용정보를 집중관리 · 활용하는 종합 신용정보집중기관에 대해 신용정보를 집중할 수 있는 금융기관에 ·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농업협동조합

자산관리회사를 추가함.

다. 무허가 채권추심업자에 채권추심업무 위탁이 금지되는 자의 범위 (안 제24조의2)

-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권추심업 허가를 받지 않은 무허가 채권추심업자에 대해 채권추심업무의 위탁이 금지되는 자를 은행, 상호저축은행, 보험회사, 여신전문 금융회사, 대부업자 등으로 함.

라. 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하는 권한 (안 별표3)

- 현재는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허가 등과 관련하여 신청의 접수만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그 요건을 갖추었는지에 대한 확인 등의 업무도 위탁함.

마. 위임직채권추심인의 불법 추심행위시 채권추심회사에 부과하는 과태료 기준금액 신설 (안 별표4)

- 채권추심회사 소속 위임직채권추심인이 채권추심업무를 함에 있어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그 위반행위를 방지할 책임이 있는 채권추심회사에 부과되는 과태료 기준금액을 법률상 한도액의 100분의 80으로 함.

3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위원회)

● 예고일자 : 2018. 2. 14.

● 마감일자 : 2018. 3. 6.

- 공모 집합투자기구의 활성화를 위해 특별자산 관련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금전차입 및 금전대여를 허용하고, 집합투자기구 투자자간 이익 분배 등 차등화를 허용하며, 존속기간이 없는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를 설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또한,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업무집행사원의 보고부담을 완화하고, 역외투자일임·자문업자의 합병·분할 등에 대한 사전승인을 사후 보고로 전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특별자산 집합투자기구의 운용특례(안 제94조제1항 및 제2항)

- 집합투자업자가 집합투자재산으로 특별자산을 취득하거나 투자를 하는 경우 일정 범위 내에서 금전차입과 금전대여를 허용함으로써 재산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함.

나. 집합투자기구의 손익 분배 등 차등화 허용(안 제187조의2 신설)

- 부동산·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 또는 집합투자업자 등이 다른 투자자보다 우선하여 손실을 충당하는 약정을 체결한 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 손익 분배 또는 순위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투자자의 다양한 선호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함.

다.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 범위 확대(안 제230조제1항)

- 집합투자기구의 재산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존속기간이 없는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를 설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라.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업무집행사원의 보고 부담 완화(안 제249조의15제8항 신설)

- 경영참여형 집합투자기구가 설립시 보고한 업무집행사원에 대한 내용이 변경된 경우 해당 업무 집행사원이 운용중인 모든 경영참여형 집합투자기구별 변경 보고가 아닌 업무집행사원의 변경 보고만으로 가능하도록 변경함으로써 보고 부담을 완화함.

34.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 예고일자 : 2018. 2. 14.
- 마감일자 : 2018. 3. 28.

- 영업용 화물자동차 교통안전 확보를 위하여 화물차 운전자의 운전중 주의 의무 및 차량 안전관리 의무 등을 규정하는 한편, 견인차의 난폭 운전, 콜밴의 부당요금 수취 및 불법호객 행위 등 불법운송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준수사항 신설 및 위반행위 처벌을 강화하고, 인허가 간주제 도입 및 위탁화물 관리책임 폐지, 난폭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가 정지된 종사자 처벌규정 신설 등 법 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 개정 등을 포함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화물차 차고지 설치 확인 절차 개선(안 제5조제2항)

- 차고지 설치 확인서 발급 시 해당 관청에서 운송사업 허가 관청으로 직접 전달하도록 절차 개선
- 나. 난폭운전 운송사업자 처벌근거 마련(안 제21조제24호 신설)
 - 운송사업자 준수사항에 운전자가 난폭운전을 못하도록 종사자 관리·감독 의무를 신설하고 위반차량 운행정지 처분 하도록 함.
- 다. 운수종사자 및 운송사업자 안전교육 강화(안 제21조제25호 및 안 별표 3 비고 2 신설)
 - 운수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이수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미이수 운수종사자 수에 따라 과징금을 차등 부과하고, 중대·빈번 교통사고 유발 운수업체에 대해 교통안전체험교육을 받도록 함
- 라. 벤형 화물자동차 호객행위 금지 및 위반시 처분근거 마련(안 제21조제26호 신설)
 - 운수사업자에게 소속 운수종사자가 호객행위를 못하도록 관리·감독 의무를 부여하고 위반시 사업일부정지 하도록 함
- 마. 콜밴 ‘화물’ 외국어 표기 의무화(안 제21조제27호 신설)
 - 운수사업자에게 콜밴 차량 외부에 ‘화물’ 외국어 표기 의무를 부여하고 위반시 운행차량 운행정지 하도록 함
- 바. 화물차 운전자 운전중 주의의무 강화(안 제22조제7호 신설)
 - 운수종사자에 대하여 차량 운전 중 휴대폰 사용, 영상표시장치 시청·조작 등 금지 의무를 신설하고 위반시 과태료 부과
- 사. 부당요금 처분 강화(안 별표 2 제5호, 제6호 및 별표 3 제3호, 제4호 개정)
 - 부당요금을 수취하거나 환급을 거부한 운송사업자에 대해 위반차량 운행정지 처분을 강화함
- 아. 최고속도 제한장치 해제 처분 강화(안 별표 2 제16호 및 별표 3 제11호 개정)
 - 최고속도 제한 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는 상태에서 화물차를 운행토록한 운송사업자에 대한 운행정지 처분을 강화하고 과징금을 삭제 함
- 자. 고의·과실로 교통사고 사상자를 발생시킨 운수종사자 처벌 강화(안 별표 3의2 제4호)
 - 고의·과실로 인한 교통사고 사상자를 발생시킨 운수종사자에 대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적상실자에 대한 대통령명의 증서 발급 근거조항 신설(안 제21조의2 제2항)

1)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국적동포로서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보훈급여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이들의 희생과 공훈을 인정하는 내용의 증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함.

37.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교육부)

- 예고일자 : 2018. 2. 14.
- 마감일자 : 2018. 2. 20.

○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예 따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정원 책정 승인 신청서류 대상을 일반직 “4급” 에서 “3급” 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2(정원 책정의 승인) 개정예 따라 제4조(정원 책정 승인 신청서류) 전단의 일반직 “4급” 이상을 일반직 “3급” 이상으로 변경하도록함.

38.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 예고일자 : 2018. 2. 14.
- 마감일자 : 2018. 3. 26.

○ 우수전자거래사업자 인증 및 전자화문서의 작성 시설·장비 인증제도 폐지 등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개정(‘17.10.24. 개정, ’ 18.4.25.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로 관련 하위법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 우수전자거래사업자 인증 및 전자화문서 작성 시설·장비 인증제 관련 규정 삭제(현행 제1조의 2, 제1조의6, 제1조의7, 별표 1,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호의2서식, 별지 제1호의3서식 및 별지 제1호의4서식 삭제)

39.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 예고일자 : 2018. 2. 14.
 - 마감일자 : 2018. 3. 26.
- 우수전자거래사업자 인증 및 전자화문서의 작성 시설·장비 인증제도 폐지 등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개정('17.10.24. 개정, ' 18.4.25.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로 관련 하위법령을 정비하는 한편, 공인전자문서센터의 증명서 발급절차 간소화를 통해 이용자가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우수전자거래사업자 인증 및 전자화문서 작성 시설·장비 인증제 폐지(현행 제2조의2, 제2조의3, 제22조의2 제1호 및 제2호, 별표 2 삭제 및 안 별표 4)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우수전자거래사업자 인증 및 전자화문서 작성 시설·장비 인증제 관련 규정을 삭제·정비함
- 나. 공인전자문서센터 증명서 발급절차 개선(안 제15조의9제2항)
- 공인전자문서센터의 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이용자가 센터를 직접 방문하여야 하고 전자문서 내용을 첨부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증명서에 철인하여 발급하도록 한 규정을 위변조, 진위 확인 조치를 통해 온라인상에서 편리하게 발급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함

40.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정거래위원회)

- 예고일자 : 2018. 2. 14.
 - 마감일자 : 2018. 3. 26.
-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2018.1.9. 공포, 7.16. 시행)
으로 신설된 법 제26조의2와 제27조의2에 따른 신고포상금 제도 및
서면실태조사의 시행을 위하여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법 위반

억지 효과 제고를 위해 반복 범위반행위 등에 대한 과징금 가중 상한을 상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고 함

○ 주요내용

가. 신고포상금 지급대상행위 및 지급대상자, 지급기준 및 절차 규정 신설(안 제19조의2)

1) 신고포상금 지급의 대상행위를 과징금 및 시정명령의 대상이 되는 법 위반 행위로 규정하면서, 지급 대상자는 동 행위를 신고하거나 제보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최초로 제출한 자로 규정

2) 지급의 기준 및 절차에 관한 기타 사항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의7 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

나.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에 따른 과징금 가중 상한을 50%에서 100%로 상향(안 별표1)

다. 서면실태조사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 규정(안 별표2)

41.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

- 예고일자 : 2018. 2. 14.
- 마감일자 : 2018. 3. 26.

○ 관계부처 합동 · 4차 산업혁명 대비 국가기술자격 개편 방안 · (' 17.3 월, 국무회의)에 따라 산업현장의 인력양성 수요를 반영하여 로봇소프트웨어개발기사 등 12개 종목을 신설(별표 2, 별표 7, 별표 8, 별표 9, 별표 19)하고, 패션디자인산업기사 등 22개 종목의 시험과목 등을 현장 직무 중심으로 개선(별표 2, 별표 8, 별표 9, 별표 19)하려는 것임

42. 농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농림축산식품부)

- 예고일자 : 2018. 2. 19.
- 마감일자 : 2018. 4. 2.

○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신고 제도의 도입을 위한 「농지법」이 개정(법률 제14985호, '17.10.31)됨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및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분법·시행('16.9.1)됨에 따른 해당 법률명을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신고 제도 도입

- 1) 일시사용신고서 서식, 일시사용신고서에 첨부할 서류, 시장·군수의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확인 의무, 일시사용신고증 발급 절차 등 신설(안 제34조의2제1항부터 제4항 및 별지 제27호의2부터 제27호의4서식 신설)
- 2) 타용도 일시사용신고 대상농지의 협의요청서 서식 및 복구비용 반환청구서 서식 개정(별지 제28호 서식, 별지 제30호 서식)
- 3) 일시사용신고 철회 절차 신설 및 철회서 서식 개정(안 제51조제4항 신설 및 별지 제54호서식 개정)
- 4) 일시사용신고대장의 작성 및 관리를 전산파일로 처리(안 제60조 제6호 신설)

나.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명칭 변경

- 1) 전용대상 농지의 개별공시지가 확인을 위한 관련 근거법 명칭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변경(안 제28조제1항제2호)
- 2) 농지보전부담금 부과명세서의 첨부 서류 중 감정평가서의 관련 근거법 명칭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변경(안 제38조제2항 제4호)

43. 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농림축산식품부)

- 예고일자 : 2018. 2. 19.
- 마감일자 : 2018. 4. 2.

-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신고 제도의 도입을 위한 「농지법」이 개정(법률 제14985호, '17.10.31)됨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태양에너지 발전설비 등의 입지규제를 완화하여 농어촌발전 필요시설을 확대하고자 함.

또한,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전용허가 제한면적을 완화하고 지자체 위임 권한을 확대하여 개발 수요를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로 유도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신고 제도 도입

- 1) 신고서 제출, 신고서류의 보완·보정 또는 반려에 관한 사항, 신고사항에 대한 적합 여부 결정 및 신고증 발급 등을 규정(안 제37조의2제1항부터 제3항 신설)
- 2)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일시사용신고 대상농지의 범위 및 규모 규정 마련(안 제37조의3 및 별표 1의2 신설)
- 3) 일시사용신고 대상농지의 사용기간을 6개월 이내로 명시(안 제38조 제1항제4호)
- 4) 협의서 제출, 협의 시 심사기준, 협의사항에 대한 적합 여부 결정 등 일시사용신고 대상농지의 협의 규정 마련(안 제39조제1항부터 제3항)
- 5) 일시사용신고(협의)에 따른 복구 계획 및 복구비용명세서 제출 규정 마련(안 제40조제1항 및 제2항)
- 6) 일시사용신고(협의)에 따른 복구비용 산출기준 및 복구비용 예치 규정 마련(안 제41조제1항부터 제3항)
- 7) 복구계획에 따라 농지로의 복구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예치된 복구비용을 복구대행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42조제1항)
- 8)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시·도지사 등으로부터 일시사용신고 관련 자료를 전자적 방법으로 제공 받을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76조 제5항제2호 신설 및 같은 항 제3호 개정)
- 9) 시장·군수 등은 일시사용신고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 등이 포함 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78조제2항제4호 신설)

나. 태양에너지 발전설비의 입지규제 완화

- 1) 농업진흥구역 내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의 준공시기를 삭제(안 제29조 제7항제7호가목)
- 2) 농업보호구역 내 농지의 전용허가 제한면적을 1ha 이하로 규정하고,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의 전용허가 제한면적은 3ha로 상향 조정(안 제30조제1항제3호 및 제44조제3항제6호)

다.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규제 합리화

1)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전용허가 제한면적 완화(안 제44조제3항 제2호 및 제3호, 같은 항 제5호 및 제6호)

* 공공업무시설 및 노유자시설(1천㎡ → 3천), 기숙사시설(1만㎡ → 1.5만), 학교(1만㎡ → 3만)

2) 농지전용허가(협의) 지자체 위임 권한 확대(안 제71조제1항제1호 나목 및 같은 호 라목 1)·2))

* 시도지사 : (허가) 3만㎡ 이상 20만㎡ 미만 → 3만㎡ 이상 30만㎡ 미만(변경허가) 변경면적 1만㎡ 이하 → 3만㎡ 이하

44. 주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 예고일자 : 2018. 2. 19. ● 마감일자 : 2018. 2. 26.

- 소규모주류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주류제조자의 식품접객업 영업허가 등 취득 요건을 삭제하고, 소규모주류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출고량 기준을 정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소규모 주류제조자의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영업 허가·영업신고 취득 요건을 삭제하되, 출고량 기준을 신설하여 소규모 맥주 제조자의 연간 출고량은 3,000kl미만으로 하고, 소규모 탁주, 약주 및 청주제조자의 연간 출고량은 300kl미만으로 함.

45. 신항만건설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

● 예고일자 : 2018. 2. 20. ● 마감일자 : 2018. 4. 2.

- 해양수산부 소속기관 명칭 변경사항 반영, 신항만건설사업 준공확인 주체 명확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해양수산부의 조직 등을 정한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제정(대통령령 제25985호, 2015. 1. 6. 공포·시행)됨에 따라 해양

수산부 소속기관 명칭 변경사항 반영(안 제6조제1항,제2항)

나. 불분명했던 준공확인 주체를 해수부장관이 아닌 사업시행자로 명확하게 함(안 제7조제1항 및 제3항)

46. 신항만건설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

● 예고일자 : 2018. 2. 20.

● 마감일자 : 2018. 4. 2.

○ 신항만건설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전담기관 지정기준, 신항만건설사업 시행자의 범위 중 민간투자자의 자격요건, 신항만 연계 기반시설 범위의 구체화, 사업시행자가 할 수 있는 부대사업의 종류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신항만건설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조사·연구를 전담하는 전담기관의 지정기준, 지원 등 전담기관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안 제2조의2 신설)
- 나. 신항만건설사업 시행자의 범위 중 민간투자자의 자격요건을 구체적으로 정함(안 제9조제1항)
- 다. 신항만건설사업 시행자가 될 수 있는 특수목적 법인의 요건을 정함(안 제9조제2항)
- 라. 사업계획서 평가를 의뢰할 수 있는 전문기관의 요건을 정함(안 제9조제6항)
- 마. 신항만 연계 우선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기반시설의 범위 구체화(안 제33조의2 신설)
- 바. 신항만건설사업시행자가 할 수 있는 부대사업의 종류와 부대사업을 하려는 경우 실시계획에 포함하여야 하는 사항 등을 정함(안 제34조의2 신설)
- 사. 해양수산부의 조직 등을 정한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제정(대통령령 제25985호, 2015. 1. 6. 공포·시행)됨에 따라 해양수산부 소속기관 명칭 변경사항 반영(안 제36조)

47. 어촌·어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

- 예고일자 : 2018. 2. 20.
 - 마감일자 : 2018. 4. 2.
- 「어촌·어항법」 개정(법률 제15133호, 2017. 11. 28. 공포, 2018. 5. 29. 시행)에 따라 ‘어항운영전산망’을 ‘어항통합정보시스템’으로 용어를 수정하고, 어항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및 유지보수 등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용어의 수정(안 제42조제1항)
 - 개정법률 제2조에 따라 ‘어항운영전산망’을 ‘어항통합정보시스템’으로 용어를 수정함
 - 나. 어항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위탁근거 마련(안 제44조제2항 제9호 신설)
 - 어항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을 한국어촌어항협회에 위탁 가능하도록 근거 신설

48. 어촌·어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

- 예고일자 : 2018. 2. 20.
 - 마감일자 : 2018. 4. 2.
- 「어촌·어항법」 개정(법률 제15133호, 2017. 11. 28. 공포, 2018. 5. 29. 시행)에 따라 ‘어항운영전산망’을 ‘어항통합정보시스템’으로 용어를 수정하고, 어항의 통계관리 및 정책의 수립·추진과 관련되는 정보 등을 통합하여 종합적으로 구축할 수 있도록 시행체계를 개선하려는 것임
- 용어의 수정 및 어항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체계 개선(안 제26조)
‘어항운영전산망’을 ‘어항통합정보시스템’으로 용어를 수정하고, 종전에 어항관리청(지자체)에서 개별 구축·운영하던 것을 통합하여 종합적으로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

49.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

• 예고일자 : 2018. 2. 20.

• 마감일자 : 2018. 4. 2.

- 「선박안전법」 개정(법률 제15002호, 2017.10.31. 공포, 2018.5.1. 시행)에 따라 선체두께측정업체 지정, 선박용물건의 형식승인 갱신 및 수출 컨테이너화물의 총중량 검증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선령에 따라 선체두께 측정점을 증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노후선의 검사기준을 강화하고, 항해용 간행물의 종류를 국제기준과 일치시키는 한편, 임시승선자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등 선박검사제도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일시적으로 승선하는 임시승선자의 범위 명확화(안 제5조)

- 임시승선자로 인정하는 자의 범위 중 선사 직원을 선박업무에 종사하는 선사 직원으로 한정하고 어선법이 적용되는 나잠어업 종사자를 제외시킴

나. 응급환자 수송 등 관공선 최대승선인원 초과 허용근거 마련(안 제8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관공선이 응급환자 수송 및 산불 진화 등 긴급한 공무 수행을 위해 불가피하게 최대승선인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는 근거를 마련함

다. 선박검사 신청서류 제출절차 보완(안 제12조)

- 선박소유자가 대항검사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전화 또는 전자 메일 등으로 선박검사를 신청하는 경우 첨부서류 중 선박검사증서는 선박검사를 받을 때 제출할 수 있도록 함

라. 임시검사 집행 사유 및 절차 정비(안 제21조)

- 해양수산부장관이 임시검사 받을 내용 및 시기를 지정하려는 경우 선박검사증서 뒤 쪽에 그 내용과 시기를 기재하도록 함

마. 선체 두께측정업체 지정 및 지도감독 절차 정비(안 제30조, 제86조 및 제87조)

- 장관은 지정업체에 대해서는 연 1회 이상 지도감독을 수행하도록 함

바. 선박용물건 등에 대한 형식승인 갱신절차 신설(안 제36조)

- 유효기간 만료 30일전까지 갱신을 신청하도록 하고, 장관은 필요시

- 현장 방문조사를 통해 갯신의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도록 함
- 사. 수입된 선박용물건 등에 대한 예비검사 절차 개선(안 제54조)
- 국내에서 제조되지 않고 수입되는 선박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선체는 수입된 이후 국내에서 예비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함
- 아. 항로지 등 항해용 간행물 종류 명확화(안 제74조)
- 선박에 비치하여야 할 항해용 간행물의 종류에 ‘항로지’를 추가하고, ‘항로고시’는 관련 법률에 따라 ‘항행통보’로 명칭을 변경함
- 자. 컨테이너로 수출하는 화물의 총중량 검증 세부절차 신설(안 제79조)
- 총중량 검증방법을 명시하여 화물소유자의 사정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총중량 검증의무가 없는 화물의 범위 및 정보제공 방법 등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
- 차. 지정 직무교육 이수 시 선박검사원 자격 인정근거 신설(안 제97조의2)
-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별도의 직무교육을 이수 시 자격기준 중 관련 분야 경력의 일부를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근거를 마련함
- 카. 최대승선인원 산정기준 개선 등(안 별표 6)
- 임시로 여객정원 증원을 허용하는 대상을 피서철이나 명절 등에 시행하는 특별수송기간만 인정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도서지역에서 실시하는 특별행사기간은 제외함
- 타. 항만건설작업선 별도건조검사 신청 시 제출도면의 종류 신설(안 별표 7)
- 「항만법」 제29조의3에 따라 별도건조검사를 받게 되는 항만건설 작업선이 제출해야할 선박 및 건설장비 도면의 종류를 규정함
- 파. 선체두께측정범위 확대 등 선박검사 기준 및 절차 보완(안 별표 10, 별표 12 및 별표 15)
- 선박의 규모뿐만 아니라 선령 및 선체 노후화 정도에 따라 선체 두께 측정 개소를 증가시킬 수 있도록 하고 워터제트 추진방식의 추진축 검사 방식을 현실화 함

50. 선박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

- 예고일자 : 2018. 2. 20.
- 마감일자 : 2018. 4. 2.
- 「선박안전법」 개정(법률 제15002호, 2017. 10. 31. 공포, 2018. 5. 1. 시행)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선체 두께측정업체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할 기준을 정하고, 선박검사 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이 갖추어야 할 기준을 강화하여 선박검사의 품질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선체 두께측정업체 지정기준 신설(안 제4조의2)
 - 선체 두께측정업무를 수행하는 업체는 사무소, 측정 장비, 자체 업무규정 및 일정 자격을 갖춘 인력을 갖추도록 정함
 - 나. 검사 등 대행기관의 적합성 인정요건 강화(안 제10조제3항 및 별표1)
 - 해양수산부장관과 선박검사 등 업무 대행협정을 체결할 대행기관은 윤리경영 등에 관한 품질경영 체계를 갖추도록 함

51.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소방청장)

- 예고일자 : 2018. 2. 20.
- 마감일자 : 2018. 4. 2.
- 의용소방대원이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임무를 수행한 때에는 시·도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나, 「동 법률 시행규칙」 제19조에서 1일 4시간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강원도 산불(' 17.5월)과 포항지진(' 17.11월)과 같이 장기간 임무를 수행한 경우에도 1일 4시간의 소집수당을 지급할 수밖에 없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함.
- 이에 장기간 임무를 수행한 경우 소집수당을 현실화하기 위해 1일 8시간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관련조항을 개정하고, 전담의용소방대원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의용소방대원에 대해 8시간을 초과하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기 위함.

- 의용소방대원의 임무수행에 따른 소집수당 현실화를 위해 지급 기준을 1일 4시간에서 8시간으로 상향(안 제19조제2항 개정)

52.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 예고일자 : 2018. 2. 21. • 마감일자 : 2018. 4. 2.
- 미세먼지(PM2.5) 환경기준 강화에 맞춰 미세먼지로부터 어린이, 학생, 어르신 등 민감계층의 건강피해를 줄이고 보호조치를 강화하기 위해 미세먼지(PM2.5) 경보기준을 강화하고, 연간 출고대수 4,500대 이하의 소규모 휘발유차 제작자의 증발가스 기준을 2022년부터 적용하려는 것임

53.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 예고일자 : 2018. 2. 21. • 마감일자 : 2018. 4. 2.
- 국민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선택진료비 폐지에 따라 진료비 영수증 서식의 선택진료비 항목을 삭제하고자 함
-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서식에서 선택진료비 항목 삭제(별지 제6호, 제7호, 제8호, 제9호)

54.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 예고일자 : 2018. 2. 21. • 마감일자 : 2018. 4. 1.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사회보장급여법’)」과 중복되는 조항을 삭제하거나 조정 등을 내용으로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4923호, 2017. 10. 25. 공포)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과 중복되는 조항을 삭제·조정
 - (삭제)· 제1조의2(자료의 요구) 삭제

- 제1조의3(사회복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제1조의4(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 제1조의5(실무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 제2조(복지위원)
- 제6조(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임용·배치현황 보고)
- 제19조의2(서비스 제공의 신청 및 고지)
- 제19조의3(복지욕구의 조사 및 서비스 제공의 결정 통보)
- 제19조의4(서비스 제공 계획의 작성 등)
- 제33조(공통서식)
- (조정) • 제5조(사회복지사 임면사항 보고 및 보수교육 등) 1항 :
“법 제6조 의2제2항” 을 “법 제6조의2제1항” 으로 변경

55.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 예고일자 : 2018. 2. 21.
- 마감일자 : 2018. 4. 1.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사회보장급여법’)」 과 중복되는 조항을 삭제하거나 조정 등을 내용으로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4923호, 2017. 10. 24. 공포)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사회복지사업” 범위 확대 (안 제1조의2)
 - 사회복지 사업 관련 법률을 시행령으로 추가 열거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기존 의원 발의시 제기된 법률* 등 명시하는 등 근거법률 확대
 - 나.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과 중복되는 조항을 삭제·조정
 - (삭제) • 제1조의2(전담기구의 설립 및 운영 등)
 - 제7조(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임용)
 - 제25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항 1호~5호
 - (조정) • 제25조(권한의 위탁) 제2항제1호: “법 제6조의2제3항” 을
“법 제6조의2제2항” 으로 변경
 - 제25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항 및

- 제2항6호 : “법 제33조의7” 를 “법 제5조의2” 로 변경
 다.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행정처분 관련 정보 공표 세부사항 (안 제24조의2)
 - 시장·군수·구청장이 사회복지법인 또는 시설 대상 행정처분 정보를 공표하도록 함에 따라, 공표에 필요한 세부규정도 그 주체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을 추가 적시
 라. 사회복지사 자격 3급 폐지에 따른 자격기준 등 삭제 (안 별표 1)
 - 시행령 별표 1(사회복지사의 등급별 자격기준) 사회복지사 3급 삭제

56.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 예고일자 : 2018. 2. 21.
- 마감일자 : 2018. 4. 2.
- 주거사다리 구축을 위한 ‘주거복지 로드맵(11.29)’ 발표에 따라 신혼부부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및 공공분양주택의 입주자 선정에 관한 특례를 신설하고자 함
- 신혼부부 우선공급대상을 혼인기간 5년 이내 신혼부부에서 7년 이내 무자녀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까지 확대하고 신혼부부 우선공급의 경쟁 발생시 입주순위를 소득, 자녀수, 해당지역 거주기간 등을 점수화하는 방식으로 개편하며, 그 공급량을 건설량의 30퍼센트로 2배 확대(기존 15%)하고자 함

57.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교육부)

- 예고일자 : 2018. 2. 21.
- 마감일자 : 2018. 4. 2.
- 산학협력 정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추진과 국가 수준의 산학협력 및 산업기술인력 양성 정책의 총괄 조정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산학협력위원회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이 개정(법률 제15041호, 2017.11.28.공포, 2018.5.29.시행)됨에 따라, 산업교육 및 산학협력 기본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절차, 국가산학협력위원회 구성·운영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산업교육 및 산학연협력 기본계획의 해당 연도 시행계획과 전년도 추진 실적을 종합·점검하여 국가산학연협력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세부 사항에 대하여 정함(안 제5조)
- 나. 국가산학연협력위원회 위원 및 대통령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에 대해 정함(안 제16조 신설)
- 다. 국가산학연협력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안 제16조의2 내지 제16조의7 신설)

58.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 (인사혁신처)

- 예고일자 : 2018. 2. 22.
- 마감일자 : 2018. 4. 4.

- 신규임용자에 대한 연가일수 조정과 휴·복직자에 대한 합리적인 연가일수 부여로 연가제도 운영의 합리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고, 연가사용 촉진제, 연가 저축제 등을 통해 연가사용을 활성화함과 동시에 일·가정 양립을 통해 안심하고 출산·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문화를 확산시키고 공직 생산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관련 복무제도 개선 필요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초과근무시간 저축연가제 도입(안 제11조 제4항)
 - 1) 초과근무시간을 적립하여 필요한 경우에 연가로 사용하는 ‘초과근무시간 저축휴가제’를 도입하여 휴가선택권 확대 및 장기휴가 활성화
 - 2) 사용하지 않아 이월된 연가일수와 초과근무시간을 연가로 환산하여 적립하도록 하고, 필요시 휴가로 사용하도록 하고 그 외 사용절차에 대해서는 인사혁신처 예규로 규정
- 나. 시간선택제 공무원 대체휴무 인정범위 확대(안 제11조 제5항, 별표3 5호)
 - 1) 시간선택제공무원 등은 본인의 정상근무일이 아닌 날 근무명령을 받아 근무한 경우에는 다음 정상근무일을 휴무할 수 있도록 개선
- 다. 신규임용자 등 연가일수 조정(안 제15조 제1항, 제16조 제6항 개정)
 - 1) 신규임용자 연가일수 부족 및 신규자와 장기재직자간 연가일수 편차를 해소하기 위해 현행 21일 한도 내에서 1년 이상 1년 미만

- 재직자에 최소 11일의 연가일수를 보장하고, 모든 재직기간에서
년 단위로 연가일수 부여하여 근로기준법과의 형평성 확보
- 라. 권장연가 최저한도 의무화(안 제16조의2 제1항)
- 1) 적극적인 연가사용 유도를 위해 권장연가 일수는 최소 10일 이상으
로 정하도록 의무화
- 마. 연가사용 촉진제 도입(안 제16조의2 제2항)
- 1) 행정기관의 장이 서면으로 연가사용을 촉구하고 사용시기를 통보
한 경우, 소속 직원이 연가를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연가보상비
지급 의무를 면제할 수 있는 근거조항 마련
- 바. 연가저축기간 확대(안 제16조의3 제1항, 제16조의3 제2항)
- 1) 현행 권장연가일수 이외의 미사용 연가를 현재 ‘5년 ‘에서
‘10년 ‘ 까지 저축계좌로 저축가능토록 개선
 - 2) 부칙에서 기존에 저축한 연가에 대한 특례를 규정
- 사. 연가일수 부여 방식 합리화(안 제17조 제2항, 제17조 제3항 개정)
- 1) 연도중 임용자에게 임용일자를 고려하여 해당연도의 실제 재직기간
만큼 연가일수를 부여
 - 2) 실제 재직기간만큼만 연가사용을 승인하되, 연가승인 가능일수를
초과하여 사용한 자에 대해서 저축연가에서 차감하고, 저축연가
가 없는 경우 결근으로 인정하여 연가사용에 대한 합리성 확보
 - 3) 부칙으로 연가일수 공제에 대한 경과조치를 규정
- 아. 모성보호시간 확대(안 제20조 제4항)
- 1) 태아 및 모성보호 강화를 위해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은 임신 주수에
관계없이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
- 자. 육아시간확대(안 제20조 제5항)
- 1) 현행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공무원에게 부여하는 1일 1시
간의 육아시간을 자녀 양육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만 5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에게 1일 2시간의 육아시간을
부여하도록 자녀의 연령과 사용시간을 확대
 - 2) 다만, 업무의 연속성 확보 및 대체인력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24개월의 범위 내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

차. 자녀돌봄휴가 일수 및 사유 확대(안 제20조 제13항)

- 1) 실질적으로 자녀돌봄이 필요한 병원진료·검진·예방접종 등과 학교에서 주최하지 않더라도 사실상 학교의 공식 행사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도 자녀돌봄휴가를 연간 2일의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자녀돌봄휴가의 사유를 확대함으로써 가정친화적인 근무여건 조성

- 2) 3자녀 이상을 양육하는 공무원에 대해 자녀돌봄휴가 1일 가산하도록 규정

카. 배우자출산휴가 확대(안 별표2)

- 1) 여성의 산후조리기간이 통상 2주임을 감안하여 남성 출산휴가 기간을 현행 5일에서 10일로 확대하여 남성이 ‘아빠’와 ‘남편’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

타. 시간선택제 근무공무원의 모성보호시간(안 별표3 제4호 가)

- 1) 시간선택제 공무원 중 임신중인 여성공무원에게는 연속하여 4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날에는 1일 2시간 범위, 4시간 이하 근무하는 날에는 1일 1시간범위에서 모성보호시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

파.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육아시간(안 별표3 제4호 나)

- 1) 만 5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시간선택제 공무원에게는 연속하여 4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날에 1일 2시간, 4시간 이하 근무하는 날에는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24시간의 범위에서 자녀 돌봄, 육아를 위해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

하. 기타 미비점 보완

- 1) · 결핵예방법 · 제11조제1항의 ‘결핵검진등’을 받는 경우 공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결핵 예방을 지원(안 제19조 제6호)
- 2) 노동관계 법령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정기대의원회(연1회)에 한해 공가를 허용하여 공무원 노조활동 보장(안 제19조 제11호)
- 3) ‘불임치료시술휴가’ 명칭을 ‘난임치료시술휴가’로 변경하여 난임 가정에 희망을 주고 난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전환 (안 제20조 제11항)
- 4) 직위해제 처분 후에 징계의결 요구에 대해 징계위원회에서 징계하지 않기로 의결하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후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 등에는 연가일수를 공제하지 않도록

규정(안 제17조 제1항)

-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사망에 대한 경조사휴가일수를 2일에서 3일로 확대(안 별표2)
- 6)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연가일수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재직기간·의 계산 방법을 연.월.일수로 명확하게 규정(안 제15조 제2항)
- 7) 병가 사용시 진단서를 제출해야 하는 기준을 복무규정에 명확히 규정하여 제도 운영상 혼란을 방지(안 제18조 제3항)
- 8) 유연근무 근거조항 변경에 따른 반영(안 제9조 제4항)
- 9) 법조항 적용대상 범위 명확화(안 제24조의3, 별표3)

59.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 예고일자 : 2018. 2. 22.
- 마감일자 : 2018. 4. 3.
- 장기등기증자에 대한 지원항목에서 ‘위로금’을 삭제하되, 대신에 국가가 장기등기증자 및 그 유족에 대하여 추모 및 예우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928호)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 주요내용
 - 가. 장기등기증자의 가족 또는 유족에게 지급해왔던 위로금 항목을 삭제함(안 제26조제1항).
 - 나. 장기등기증자 등에 대한 추모 및 예우 사업의 내용을 정하고, 장기 이식등록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의2 신설).

60.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방송통신위원회)

- 예고일자 : 2018. 2. 22.
- 마감일자 : 2018. 3. 19.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 대상 사업자를 확대하고, 요구 대상 자료의 범위를 명확히 하며, 방송사업자 등에 대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 불응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하는 등의 내용으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자료제출 요구 관련 과태료 부과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과태료의 부과기준(안 제14조 신설)

-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별표1에 정할 수 있도록 함.

나. 과태료 부과기준([별표1] 신설)

- 1)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 그 밖에 위반행위자의 위반행위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도록 함.(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는 제외)
- 2)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자가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동일한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직전에 부과된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밖에 위반행위자의 위반행위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 범위에서 과태료를 늘릴 수 있도록 함.(다만, 법 제30조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상한을 넘을 수 없음)

61.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 예고일자 : 2018. 2. 22.
- 마감일자 : 2018. 4. 3.

○ 비행교관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자격등급을 세분화하고, 지정기준을 위반한 전문교육기관에 대한지정 취소 등의 내용으로 항공안전법」이 개정(법률 제14955호, 2017. 10. 24. 공포, 2018. 4. 25. 시행)됨에 따라 위반행위별 과징금 부과 및 업무정지 기간 등의 세부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비행교관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항공기 종류로만 구분하던 조종

- 나. 전문교육기관 지정서와 함께 발급하는 훈련운영기준의 세부 내용과 별지 서식을 신설(제104조 제3항 · 제4항, 별지 제58호의2 서식)
- 다. 서류방식의 지정전문교육기관 입과자 및 평가결과 보고사항을 항공교육훈련포털시스템에 입력시 보고한 것으로 같음(제104조제6항)
- 라. 지정전문교육기관의 교육훈련체계가 변경되는 경우를 교육과정을 개설 또는 폐지하는 경우 등으로 구체화(제104조제7항)
- 마. 지정전문교육기관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하여 안전감독 주기를 정기(매년 1회) 또는 수시로 검사하도록 강화(제104조제8항)
- 바. 지정기준을 위반한 전문교육기관에 대하여 지정 취소 또는 업무의 정지처분의 세부기준 마련(제104조의2 및 별표 12의2 신설)

- 예고일자 : 2018. 2. 22.
- 마감일자 : 2018. 4. 3.

○ 항공종사자 양성 전문교육기관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지정기준을 위반한 전문교육기관에 대하여 업무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항공안전법」 이 개정(법률 제14955호, 2017. 10. 24. 공포, 2018. 4. 25. 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법률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세부적인 위임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2) (관리·직원편의시설) 필수시설이 아닌 선택시설로 규정
- 3) 장례식장 업무를 담당하는 상주직원이 없으므로 별도의 사무실, 직원 휴게실, 샤워실 등은 설치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
- 4) (부검실 운영) 설치 근거 마련 및 염습실과 통합운영
- 5) 민간장례식장과 달리 부검을 실시하고 있어 이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염습실과 병행 사용·위생기준 준용토록 규정

64. **인성교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교육부)**

- 예고일자 : 2018. 2. 22.
- 마감일자 : 2018. 4. 3.
- 인성교육진흥법이 일부 개정(법률 제15233호, ' 17.12.19. 공포, ' 18.6.20. 시행)됨에 따라 동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교원의 인성교육 관련 연수 개설·운영자에 ‘중앙교육연수원장 및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의 장’ 신설(제14조 제1항 제1호)
 - 나. 교원의 인성교육 연수계획 수립 의무자에 ‘교육부장관’ 포함(제14조 제2항)

65.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안) (중소벤처기업부)

- 예고일자 : 2018. 2. 23.
 - 마감일자 : 2018. 4. 5.
- 벤처투자제도가 중소기업창업법('86년 제정)과 벤처기업법(' 97년 제정)으로 분산되어 있고, 이슈가 대두될 때마다 시대흐름에 뒤따라 법 개정을 하면서 벤처투자제도가 체계없이 복잡·다기화됨. 이에 벤처투자 관련 법령을 하나의 법으로 통합하고 벤처투자제도를 근본적으로 시장친화적인 관점에서 체계화, 단순화, 최소 규제의 방향으로 개편함으로써 벤처투자 산업 육성과 투자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고, 창업촉진과 기업의 성장을 도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투자방식에 조건부지분인수계약 추가 (안 제2조)
 - 벤처투자 선진국인 미국에서 창업초기기업에 대한 투자의 난점을

완화하기 위하여 활용하는 SAFE와 유사한 투자방식을 허용하기 위해
'조건부지분인수계약'의 법적근거를 마련함.

나. 벤처투자 대상 확대 (안 제3조)

- 사행산업 등 경제질서 및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벤처투자를 제외한 전 산업분야에 대한 투자가 가능하도록 함.

다. 지역균형 투자 활성화 근거 마련 (안 제4조)

- 수도권과 비수도권 소재 기업간 벤처투자 격차를 완화시키기 위한 정책수립의 법적근거를 마련함.

라. 창업투자의무의 유연한 적용 (안 제31조, 제46조)

- 창투자 자본금과 개별 창업투자조합별로 창업투자의무가 부과되던 것을 운용자산 전체에 대한 의무로 변경해, 창업투자회사의 자율적인 자산운용을 허용함.

마. 벤처조합의 일원화 (안 제45조)

- 창업투자조합과 한국벤처투자조합으로 이원화되었던 벤처조합을 벤처투자조합으로 일원화함.

바. 한국벤처투자의 법정기관화 (안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

- 모태펀드를 운용하는 '한국벤처투자'를 법정기관화하여 책임성과 신뢰성을 강화함.

66.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정(안) (국토교통부)

● 예고일자 : 2018. 2. 23.

● 마감일자 : 2018. 4. 4.

○ 부동산서비스산업의 기반 조성 및 지원·육성을 통해 부동산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국민편의 증진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에 이바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이 제정(법률 제15276호, 2017.12.19. 공포, 2018.6.20. 시행)됨에 따라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신청 등(안 제2조)

-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할 서류를 교육훈련 인력·시설 및 설비 현황 등으로

- 정하고,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신청서 및 지정서의 서식을 정함
- 나.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의 기준·절차·방법·점검 등(안 제3조)
 - 인증 기준 및 인증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하고, 인증신청서 및 인증서의 서식을 정함
- 다. 인증심사대행기관의 지정 기준 및 운영(안 제4조)
 - 인증심사 대행기관에는 인증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조직을 설치하도록 하고, 인증심사대장 작성·비치 등 심사대행기관의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

67.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정(안) (국토교통부)

- 예고일자 : 2018. 2. 23.
- 마감일자 : 2018. 4. 4.
- 부동산서비스산업의 기반 조성 및 지원·육성을 통해 부동산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국민편의 증진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에 이바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이 제정(법률 제 15276호, 2017.12.19. 공포, 2018.6.20.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안 제2조)
 - 기본계획의 기본방향 변경, 사업기간을 2년 이상 가감하거나 사업비를 100분의 10 이상 증감 하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도록 정함
 - 나. 부동산서비스산업정책위원회의 구성·운영(안 제3조)
 - 위원회를 구성하는 기획재정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을 정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는 부동산서비스산업과 관련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의 자격을 정함
 - 다. 금융지원 등(안 제5조)
 - 부동산서비스산업의 연구·개발, 전문인력 양성 등 부동산서비스사업자에 대한 금융 및 행정상 지원 등 필요한 지원조치의 대상을 정함
 - 라. 실태조사 등(안 제6조)
 - 기초자료 확보 및 통계 작성을 위해 매년 국내외 산업 현황, 매출 규

- 모, 종사자 및 전문인력 현황, 경영 현황 등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함.
- 마. 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안 제7조)
- 전문인력의 육성·관리 시책에 포함되는 사항을 전문인력의 경력관리, 자격제도의 운영 등으로 정하고,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과 요건을 정함
- 바.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안 제11조 및 제12조)
- 인증 대상은 개발관리형, 임대관리형, 거래관리형 등으로 정하고, 인증기준을 유지하는지를 2년마다 정기 점검할 수 있도록 정함
- 사. 인증 우수서비스사업자에 대한 지원(안 제14조)
- 인증 우수서비스사업자에 대하여 법 제10조에 따른 금융 및 행정상 지원, 법 제21조에 따른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국내외의 홍보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함
- 아. 창업의 지원(안 제15조)
- 창업 관련 정보 제공, 법률·세무·회계 등의 교육 지원, 창업 공간 지원, 공공·민간의 창업지원서비스 알선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함

68.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교육부)

- 예고일자 : 2018. 2. 23.
 - 마감일자 : 2018. 4. 4.
-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2017.11.28)에 따라 재외한국학교 이사장을 포함한 임원이 회계부정, 횡령 및 유용, 뇌물수수 등의 비리가 중대한 경우 시정요구 없이 임원취임의 승인취소를 할 수 있도록 그 세부적인 기준을 정함으로써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2017.11.28)에 따른 시행령 조항을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시정요구 없는 임원취임승인취소 세부기준 마련(안 제9조의2 신설)
- 1) 재외한국학교 임원의 비리가 시정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하거나 중대한 비리(회계부정, 횡령, 뇌물수수 등)인 경우 시정요구 없이도 임원취소를 할 수 있도록 임원의 승인취소 규정을 강화